

소방법 시행령 개정

□ 개정일자 : 1995년 8월 10일
(대통령령 제14,747호)

□ 개정이유

소방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 방법과 보수 절차 및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 등,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, 그 밖의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수장소 중 연면적 1,000㎡ 미만의 것으로서 소화기구, 비상경보설비, 누전경보기, 피난기구, 인명구조기구,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, 소방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의 동의를 생략하도록 함(영 제4조제3항)
-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의 규모에 따라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점검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정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(영 제9조제5항)
- 위험물판매취급소에서 저장,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은 지정수량 10배 미만으로

하던 것을, 지하탱크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30배 미만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,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경우에도 지하탱크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지정수량 5배 미만에서 10배 미만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함(영 제15조)

- 관람집회, 운동시설, 통신촬영시설, 관광휴게시설 및 지하가 등은 연면적 600㎡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완화함(영 제29조제4항)
- 소방공사 감리 대상을, 건축허가 등의 대상(400㎡) 이상으로 하던 것을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것으로 하되, 10층 이하 아파트, 학교, 공공업무시설 및 냉동창고 등과,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특수장소는 소방공사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(영 제40조의2)
-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하자보수 보증의 방법과 하자보수의 절차 등 하자보수 보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영 제40조의4 및 제40조의6)
- 소방공사의 감리대상 중 상주감리 대상은 연면적 10,000㎡ 이상의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 30,000㎡ 이상의 것으로 완화함(영 제41조의4 제2항)

□ 주요개정내용 (요약)

1. 건축허가 동의를 얻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확대
- 건축물의 연면적(또는 지총, 무창총)이

- 1,000m² 미만으로써, 소화기구, 비상경보설비, 누전경보기, 피난기구, 인명구조기구, 유도등, 유도표지판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
- 용도변경시, 소방시설의 변동이 없거나 소규모공사만의 소방대상물

2. 방화관리자 자격요건 완화

- 소방시설 점검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시킬 경우, 자격 보유와 관계 없이, 방화관리업무 관리 감독자 중에서 선임(96. 1. 1 시행)
- 공공기관의 경우, 직위의 지정으로 갈음

3. 소방계획서

- “매년 작성” 부분 삭제

4. 방염처리 대상

- “전시장” 추가

5. 위험물취급소 기준 완화

- 석유판매취급소 : 지정수량 30배 미만의 옥내탱크 또는 지하탱크를 갖춘 등유, 경유 판매소(옥내탱크의 저장용량은 10배 미만)
-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: 지정수량 5배 미만의 휘발유, 등유, 경유 외의 위험물판매소(4류, 6류 위험물의 지하탱크인 경우 10배 미만)

6.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

- 이동판매취급소와 4류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판매하는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에는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강화

7. 예방규정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조소 등

- 난방 목적의 옥내탱크저장시설
- 지하탱크저장시설만 설치한 일반취급소, 저장취급소
-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 등
- 기타, 시행령 제22조 제1호~5호에서 정한 것 이하 규모의 시설

8.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조정

◦ 판매시설

- 3층이하 건축물 - 바닥면적 6,000m² 이상
인 경우 : 전층 대상
- 4층이상 건축물 - 바닥면적 5,000m² 이상
인 경우 : 전층 대상

◦ 랙크식창고

- 연면적 1,500m² 이상인 경우 대상
- 기타의 소방대상물에서 냉동창고 제외
- 연면적 5,000m² 이상인 복합건축물 : 전층 대상 단,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적용

9. 물분무소화설비등 설치대상 완화

-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의 주 조정실로서, 양압시설이 설치되고, 220V 이하의 저전압이 사용되며, 24시간 상주의 경우 설치 제외

10.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완화

-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, 통신촬영시설 관광 휴게시설, 지하가 : 600m² 이상 대상을 → 1,000m² 이상 대상으로 완화

11. 제연설비 설치대상 완화

- 잣복도형 아파트의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외

12. 자동식소화기의 설치 면제

-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 설치 면제

13.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

-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등을 내무부령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였을 때

14.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

- 주위에 소방용수시설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었을 때

15. 소방공사 감리 제외 대상

- 10층 이하의 아파트

- 학교, 공공업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)
 - 냉동창고, 동식물관련시설, 위생등관련시설, 교정시설
 -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(면제 또는 적용 배제)에 해당하는 특수장소(전체 적용시)
- 16.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기간 및 방법(신설, 1996. 1. 1 시행)**
- 하자보수기간
 - 1년 : 유도등, 유도표지, 비상조명등, 비상방송설비, 무선통신보조설비
 - 2년 : 자동식소화기, 옥내소화전, 스프링클러, 물분무등소화설비, 옥외소화전, 자동화재탐지 설비, 소화용수설비, 소화활동설비(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)
 - *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 준용
 - 하자보수 불만사항의 통보
 - 연면적 10만m² 이상(아파트 제외) : 특수장소 관계인 → 내무부장관
 - 연면적 10만m² 미만, 아파트 : 특수장소 관계인 → 소방서장
 - 하자보수의 보증
 - 대상 : 시공신고 대상 소방시설의 공사(계약금액 5백만원 이하의 공사는 제외)
 - 방법 : 금융기관 발행 지급보증서 등을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예치
 - 보증금
 - 경보설비 : 공사금액의 5/100
 - 기타설비 : 공사금액의 3/100
 - 하자보수의 종료
 - 완료 예정 통보 : 기간 만료 30일전 (공사업자가 → 특수장소 관계인에게)
 - 하자보수 종료 : 기간 만료시(보수중인 경우는 보수 완료시)
- 17. 소방안전기술위원회(신설, 1996. 1. 1 시행)**
- 구성
 -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: 내무부 소속

- 공무원 1인 포함 9인(내무부장관이 위촉)
-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 : 시·도 소속
공무원 1인 포함 5~7인(시·도지사가 위촉)
 - * 위촉 대상
 - 소방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
 -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
 - 5년 이상 교육, 연구, 또는 종사자
 - 업무 :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 여부 심의 등
 - * 법 제65조의11(심의, 의결 업무) 참조
 - 임기 : 3년(공무원이 아닌 경우)

18. 2급 방화관리대상 조정

-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건물 중 통신촬영시설, 관광휴게시설, 일반목욕장, 관람장, 체육관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